

Part4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발제문

황성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발제문

황 성 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I. 서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해당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아니면 임의관할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를 넘어, 실무상 관할 위반 여부 및 이송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II. 입법연혁 - 언론기본법 등

1. 언론기본법 제51조제2항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의 직접적인 연원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0. 12. 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 제51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과 문언이 거의 동일합니다.

「언론기본법」[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제정]

제51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제3항 내지 제6항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²⁾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1963년 제정)」, 「언론윤리위원회법(1964년 제정)」 및 「방송법(1963년 제정)」을 폐지하면서 만든 법률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고,³⁾ 청구자와

1) 「언론기본법」 제49조 (정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신문·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정정보도방송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69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705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3) “1980년말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이름의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으며, 이는 1987년의 정간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문제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보도문을 무료로 보도할 의무만을 진다는 점에서 서구의 반론권제도를 입법화한 것임에도, ‘정정보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혼선이 있

언론기관과의 중재를 위한 준사법적 기구(언론중재위원회)를 마련하며, 법원은 언론에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언론기본법」 제51조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를 규율하면서, 제1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기간행물법(1987년)」 및 「언론중재법(2005년)」

「언론기본법」 이후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그리고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 제26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정보도청구 등의 관할규정 문언은 사실상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속관할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라는 문제도 함께 승계되었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제19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법적 성격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리되었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이에 따라 1995. 12. 30. 개정된 정간법에서 그 용어를 종전의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여 혼란을 해소하였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제14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제14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26조 제4항),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제14조 제1항)에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정정보도청구의소 가처분재판 규정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한 반면,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가처분절차에서는 증명 아닌 소명에 의하는데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소명만으로 청구를 인용하고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제출이나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⁴⁾

4) 당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도 존재하였음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합헌)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쌍방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또한 소명의 증명정도와 증명의 증명정도는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것은 진실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고, 정정보도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참고로,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처리의 필요성을 들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전원재판부, 당시 심판대상이 정정보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실질은 반론보도임).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u>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u>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Ⅲ. 전속관할 여부에 관한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전속관할이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집니다. 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놓은 경우에 한합니다.⁶⁾

“것이므로 그것이 언론의 비판·견제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5) 정재황, 「헌법학[제2판]」, 박영사(2022년), 1089면

6) 직분관할 :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키는 것이 적당한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해지는 것을 말함

→ 동일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정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여러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제도를 설치·운영하는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 데 유리한데,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이 직분관할이므로 공익성이 매우 강하여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임

사물관할 :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제1심 소송사건 분담을 정한 것임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다른 입법례⁷⁾와 달리 명문으로 ‘전속관할’인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입법연혁 관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의 직접적인 연원은 1980. 12. 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 제51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입법자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⁸⁾

민사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한 집행 관련 재판적(토지관할, 직분관할 등 불문)은 전속관할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⁹⁾ 각 집행 관련 관할규정에서 당해 재판의 성질상 특정의 법원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¹⁰⁾

「언론기본법」 제51조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당시의 舊 민사소송

토지관할 : 같은 종류의 직분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배분해 놓은 것임
[주석 민사소송법(편집대표 :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11.(제9판)]

7) 「회사정리법」[시행 1981. 4. 1.] [법률 제3380호, 1981. 3. 5., 일부개정] 제6조 (정리사건의 관할) ① 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民事地方法院)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정리절차 개시신청전 1년내에 제1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이전된 때에는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는 서울民事地方法院)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 [의안번호 120446] 정기간행물에관한법률안(박경석의원등 2인 외 144인) 심사보고서 中

아. 言論侵害에 대한 救濟制度에 관하여

言論侵害에 대한 救濟制度는 아시는 바와 같이 言論의 事實的 報道에 의하여 侵害된 個人的 名譽權을 회복시키기 위한 制度로서 그 救濟方法으로서는 대개 損害賠償, 謝過廣告, 反論權, 取消등이 행하여지고 있음.

모든 方法은 궁극적으로는 司法節次에 의하여 決定되겠음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신속을 요하는 反論權의 一部인 訂正報道請求權에 대해서는 세 法律案에서 문맥은 다르나 다같이 別途로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9)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민사소송법」[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524조(재판적) 본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10) 주석 민사집행법(편집대표 :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11.(제5판)

법 규정에서도 강제집행(가집행) 관련 관할규정은 전속관할로 규정한 점, ② 정정보도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행해질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 등 후속 조치의 주체는 언론사로서 당해 재판도 언론사의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등 공익상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관할규정은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법이 아닌 소송법 관점에서도 민사소송법은 제정 이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¹¹⁾ 언론중재법에서 실질적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설하면서 재차 정정보도청구등의소에 대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위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직분관할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¹²⁾

IV. 입법론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이 전속관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해석상의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할 해석의 불일치는 사건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당사자 불편, 민원 증가 등 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도 사건기록 송부 방식 등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보건대 해석론상으로는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은 전속관할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전속관할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舊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1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신민사소송법(제15판, 2021년, 이시윤 저)에서도 해당 조항을 직분관할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음(제95면)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 5항)와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등이다(법조 32조 1항 5호).”

구체적으로 유사입법례¹³⁾를 참고하여 언론중재법 제26조제5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